

2015학년도 제2차
<제318차 이사회 회의록>

2015. 5. 14.

학교법인 대우학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2015학년도 제2차

〈제318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1 인	2 인
재적임원	10 인	2 인
참석임원	9 인	1 인

1. 일 시 : 2015.5.14(목) 07:30 ~ 10:30 (회의소집 통보일 : 2015년 5월 6일)

2. 장 소 : 포스코센터 라운지룸 (포스코 B/D 서관 19층)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윤성복, 문길주, 주인욱,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최 홍, 김선용 (9인)
- 감사 : 배홍기 (1인)

◎ 결석임원

- 이사 : 신희택 (1인)
- 감사 : 문휘창 (1인)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총장 김동연, 의료원장 유희석, 병원장 탁승제, 교무처장 임석철, 총무처장 이주희,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행정부원장 박재호, 재무회계팀장 안영찬, 재무회계팀장 이재권 (9인)
- 아주자동차대학 : 총장 신성호, 행정처장 이상권 (2인)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김창현 (2인)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분 중 아홉 분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신

상협

이사

이영현

6. 보고사항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아주대학교 및 의료원, 아주자동차대학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희 총무처장·한상욱 기획조정실장·신성호 아주자동차대학 총장이 각 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 심의안건

상임이사 이영현 : 제318차 이사회 심의안건은 학법대우 제15-105호(2015.05.06)로 통보한 내용과 같이 의안 제1호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2호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의안 제3호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4호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5호 2015학년도 의료원 원화리스 130억원 포괄계약 승인(안), 의안 제6호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품 처분 승인(안), 의안 제7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 승인(안), 의안 제8호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안 제9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의안 제10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의안 제11호 대우학원 임원 선임(안), 의안 제12호 2014학년도 법인회계 결산 승인(안) 등 12개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8. 심의내용

제 1 호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수준의 자동차특성화 대학이라는 본교의 교육비전 달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교육체계인 '공학기술교육 인증' 을 신청 중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학기술교육인증 기준의 하나인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를 교학처 부속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의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첨부된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성호

이사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 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기구) ① 본 대학에는 총장, 교학처, 산학처, 기획처, 행정처를 둔다. ② 부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그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교학처장 : 교수학습지원센터, 생활관, 창업교육센터, 학생서비스센터, 언론미디어센터, NCS(국가직무능력표준)지원센터 <신 설> 2. 산학처장 : 산업기술연구소, 취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3. 기획처장 : 국제교류센터 ③ 부설기관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학술정보센터 2. 산학협력단 3.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단 4.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단	제2조(기구) ① 본 대학에는 총장, 교학처, 산학처, 기획처, 행정처를 둔다. ② 부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그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교학처장 : 교수학습지원센터, 생활관, 창업교육센터, 학생서비스센터, 언론미디어센터, NCS(국가직무능력표준)지원센터, <u>공학기술교육 혁신센터</u> 2. 산학처장 : 산업기술연구소, 취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3. 기획처장 : 국제교류센터 ③ 부설기관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학술정보센터 2. 산학협력단 3.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단 4.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단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석

이사

신 상협

이사

이 영현

제 2 호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의 결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계산서를 보시면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11,7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수입내역으로는 등록금수입이 6,230백만원으로 총수입금의 5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입및기부금수입이 2,125백만원, 교육부대수입이 708백만원, 교육외수입이 219백만원으로 운영수입 합계는 9,282백만원이며,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2,4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보수 3,273백만원, 관리운영비 2,044백만원, 연구학생경비 2,956백만원, 교육외비용이 38백만원으로 운영지출 합계는 8,311백만원이며, 투자와기타자산지출 600백만원, 고정자산매입지출 342백만원,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2,5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2.28 현재 아주자동차대학의 자산규모는 33,419백만원이며, 부채는 4,310백만원, 기본금은 29,1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내역을 보면 유동자금 6,227백만원, 기타유동자산 559백만원, 기타자산 5백만원, 임의기금 3,800백만원, 유형고정자산 22,819백만원, 무형고정자산이 9백만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가 4,277백만원, 고정부채가 33백만원이며, 기본금은 출연기본금 22,259백만원, 임의적립금 3,800백만원, 운영차액 3,050백만원, 전기이월운영차액 3,728백만원, 당기운영차액 △678백만원으로, 부채와 기본금합계는 33,4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계산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교비회계의 운영총수익은 9,289백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등록금수입이 6,230백만원, 전입및기부금수입 2,132백만원, 교육부대수입이 708백만원, 교육외수입이 219백만원이며, 운영비용은 보수가 3,273백만원, 관리운영비 3,100백만원, 연구학생경비 2,956백만원, 교육외비용 38백만원, 기본금대체액 600백만원, 당기운영차액 △678백만원으로 비용총계는 9,2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의 결산(안)에 대하여 감사님의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홍 기 :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와 관련하여 성도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외부감사인 결산감사 결과, 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5년 2월 28일과 2014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내용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

상형

이사

이영현

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실시한 2014회계연도 업무감사에서도 아주자동차대학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내부 감사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의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 김 선 용 : 결산(안)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3 호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기조실장 한상욱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례식장의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의료원의 사업운영팀을 폐지하고 일부 직무는 구매관리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진료협력센터와 감염관리실의 운영팀장 보직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진료협력센터는 2015년 3월부 기존 진료협력업무 외 컨택센터 운영관리 및 통합 예약 상담 업무의 이관으로 관리영역 및 인력이 증가하여 업무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운영팀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감염관리 업무는 향후 본원의 가장 안전하고 친절한 병원이라는 목표 달성에 핵심 영역으로 의료기관인증 평가 및 JCI 재인증에도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서 실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운영팀장이 필요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암센터의 암센터로의 명칭변경은 의료원의 중점 진료분야인 암진료 분야에 대하여 환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전달을 위하여 타 대학병원과 동일한 암센터의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외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주 인 옥 : 개정 내용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신 상 협

이사

이 명 현

이사 이 명 현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4조(부속병원) ① 부속병원에는 원장과 제1진료부원장, 제2진료부원장, 행정부원장을 두며, 제1진료부원장 산하에는 <u>지역암센터장</u>, 내과부장, 외과부장, 교육수련부장을 두고 제2진료부원장 산하에는 간호부장을 둔다.</p> <p>② 원장은 부속병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한 통제, 조정 등 병원전반에 관한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③ 제1진료부원장과 제2진료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제1진료부원장은 <u>지역암센터</u>, 내과부 및 외과부 각과, 진료각과, 교육수련부를 관장하고 제2진료부원장은 진료지원부서 및 간호부를 관장한다.</p> <p>④ 행정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총무팀, 인사복지팀, 외래원무팀, 입원원무팀, 보험팀, 구매관리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 및 <u>사업운영팀</u>을 관장한다.</p> <p>⑤ 원장 직속으로 병원경영팀, 기관연구윤리심의실, 적정진료관리실, 건강증진센터, 권역외상센터, 현대아주의원을 두며, 병원경영팀에는 팀장을, 기관연구윤리심의실과 적정진료관리실에는 실장을, 건강증진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는 소장을, 현대아주의원에는 의원장을 둔다. 다만, 적정진료관리실에는 <u>부서장</u>을 보좌하는 부실장과 운영팀장을, 건강증진센터에는 소장을 보좌하는 부소장과 진료운영팀장 및 관리운영팀장을, 현대아주의원에는 의원장을 보좌하는 운영팀장을 둘 수 있다.</p>	<p>제14조(부속병원) ① 부속병원에는 원장과 제1진료부원장, 제2진료부원장, 행정부원장을 두며, 제1진료부원장 산하에는 <u>암센터장</u>, 내과부장, 외과부장, 교육수련부장을 두고 제2진료부원장 산하에는 간호부장을 둔다.</p> <p>② 원장은 부속병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한 통제, 조정 등 병원전반에 관한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③ 제1진료부원장과 제2진료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제1진료부원장은 <u>암센터</u>, 내과부 및 외과부 각과, 진료각과, 교육수련부를 관장하고 제2진료부원장은 진료지원부서 및 간호부를 관장한다.</p> <p>④ 행정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총무팀, 인사복지팀, 외래원무팀, 입원원무팀, 보험팀, 구매관리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 및 <u>법무팀</u>을 관장한다.</p> <p>⑤ 원장 직속으로 병원경영팀, 기관연구윤리심의실, 적정진료관리실, 건강증진센터, 권역외상센터, 현대아주의원을 두며, 병원경영팀에는 팀장을, 기관연구윤리심의실과 적정진료관리실에는 실장을, 건강증진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는 소장을, 현대아주의원에는 의원장을 둔다. 다만, 적정진료관리실에는 <u>실장</u>을 보좌하는 부실장과 운영팀장을, 건강증진센터에는 소장을 보좌하는 부소장과 진료운영팀장 및 관리운영팀장을, 현대아주의원에는 의원장을 보좌하는 운영팀장을 둘 수 있다.</p>
<p>제15조(진료부서) ① 진료부서에는 내과부(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신장내과, 중앙혈액내과, 감염내과, 알레르기내과, 류마티스내과), 외과부(위장관외과, 대</p>	<p>제15조(진료부서) ① 진료부서에는 내과부(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신장내과, 중앙혈액내과, 감염내과, 알레르기내과, 류마티스내과), 외과부(위장관외과, 대</p>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 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장항문외과, 간이식 및 간담도외과, 췌담도외과, 소아외과, 유방외과, 갑상선내분비외과, 이식혈관외과, 외상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수술실, 집중치료실, 감염관리실, <u>지역</u> <u>앞센터</u>,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협력센터를 둔다.</p> <p>② 내과부 및 외과부各科, 진료各科, 각실 및 각 센터에는 과장, 실장 또는 소장을 둘 수 있다. <삽입></p> <p>③ 각 센터의 소장은 임상과장을 겸직할 수 있다.</p> <p>④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에는 과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사장을 둘 수 있다.</p> <p>⑤ (삭제)</p>	<p>장항문외과, 간이식 및 간담도외과, 췌담도외과, 소아외과, 유방외과, 갑상선내분비외과, 이식혈관외과, 외상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수술실, 집중치료실, 감염관리실, <u>앞</u> <u>센터</u>,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협력센터를 둔다.</p> <p>② 내과부 및 외과부各科, 진료各科, 각실 및 각 센터에는 과장, 실장 또는 소장을 둘 수 있다. <u>다만, 감염관리실 및 진료협력센터에는 실장 또는 소장을 보좌하는 운영팀장을 둘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20조(행정부원장) 행정부원장 산하에 총무팀, 인사복지팀, 외래원무팀, 입원원무팀, 보험팀, 구매관리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 <u>사업운영팀</u> 및 법무팀을 두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p>	<p>제20조(행정부원장) 행정부원장 산하에 총무팀, 인사복지팀, 외래원무팀, 입원원무팀, 보험팀, 구매관리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 및 법무팀을 두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 style="text-align: center;"><u>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제 4 호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발의.

기조실장 한상욱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이 BK21 플러스 사업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기반 융복합 분야’ 를 신청하면서 연구역량 영역 중 산학간 인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적 및 물적교류의 우수 실적이 필요하여 특별임용교원 내 겸임교수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외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상 협 : 병원의 BK21 사업 추진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 홍 : (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특별임용교원의 구분) ① 특별임용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좌교수 2. 대우교수 3. 강의교수 4. 연구교수 5. 진료교수 <p><신 설></p> <p>② 석좌교수 및 강의교수를 제외한 특별임용교원의 직위는 의료원 교원 임용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연구 및 교육경력에 따라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p>	<p>제2조(특별임용교원의 구분) ① 특별임용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좌교수 2. 대우교수 3. 강의교수 4. 연구교수 5. 진료교수 6. 겸임교수 <p>② <현행과 같음></p>
<p>제 3 장 대우교수</p>	<p>제 3 장 대우교수</p>
<p>제7조(임 용) ① 대우교수는 주임교수(간호학과장 또는 연구소장 포함)가 추천(임상교원의 경우 병원장 경우)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에게 제청하며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우부교수 이상의 대우교수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용한다.</p> <p>② 대우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p>	<p>제7조(임 용) ① 대우교수는 주임교수(간호학과장 또는 연구소장 포함)가 추천(임상교원의 경우 병원장 경우)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에게 제청하며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우부교수 이상의 대우교수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용한다.</p> <p>② 대우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p>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석 이사 신 상협 이사 이 영현

현 행	개 정
<p>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임용 기간을 1년으로 한다.</p> <p>③ 대우교수의 임용기준 및 직급에 관한 사항은 전임교원에 준한다.</p>	<p>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임용 기간을 1년으로 한다.</p> <p>③ 대우교수의 임용기준 및 직급에 관한 사항은 전임교원에 준한다.</p>
<p>제 4 장 강의교수, 연구교수, 진료교수</p> <p>제10조(임 용) ① 강의교수, 연구교수, 진료교수는 주임교수(간호학부장 또는 연구소장 포함)가 추천(임상 교원의 경우 병원장 경유)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에게 제청하며 총장이 임용한다.</p>	<p>제 4 장 강의교수, 연구교수, 진료교수</p> <p>제10조(임 용) ① 강의교수, 연구교수, 진료교수는 주임교수(간호학과장 또는 연구소장 포함)가 추천(임상 교원의 경우 병원장 경유)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에게 제청하며 총장이 임용한다.</p>
<p><신 설></p>	<p>제 5 장 겸임교수</p> <p>제11조의2(자격) 겸임교수는 학생교육 및 연구 활동을 위하여 공공기관,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p>
<p><신 설></p>	<p>제11조의3(임용) ① 겸임교수는 주임교수(간호학과장 또는 연구소장 포함)가 추천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에게 제청하며 총장이 임용한다.</p> <p>②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 임용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1조의4(직무) 겸임교수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교육, 공동연구, 학생지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p>
<p><신 설></p>	<p>제11조의5(처우) ① 겸임교수의 권한, 책임 및 의무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p> <p>② 겸임교수는 국가가 인정하는 교원으로서의 권한은 갖지 아니한다.</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심생협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제 5 장 보 칩	제 6 장 보 칩
제15조(예 산) 특별임용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예산이 소요될 때에는 사전에 기획조정실을 경유하여 <u>의료원 운영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예 산) 특별임용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예산이 소요될 때에는 사전에 기획조정실을 경유하여 <u>의료원 운영회의의</u> 심의를 거쳐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칩</u></p> <p style="text-align: center;"><u>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제 5 호 2015학년도 의료원 원화리스 130억원 포괄계약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의료원 원화리스 130억원 포괄계약 승인(안) 발의.

기조실장 한상욱 : 의료원 2015학년도 필수 의료장비 도입자금을 원화리스 130억원으로 예산 편성함에 따라 해당 원화리스를 다음과 같이 포괄계약 하고자 합니다. 리스사는 NH농협캐피탈(주)로서 금리는 기준금리에 0.50%를 더한 2015년 3월 26일 기준 2.543%로 1년 단위 변동금리이며, 리스도입 대상 장비는 임상 각과에서 신규구입 및 노후교체, 장비단종 등의 필수 사유로 구입이 요구되는 장비 및 기본운영 비품이 70억원이며, 나머지 60억원은 권역외상센터 신축에 따른 장비 및 비품 구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포괄계약의 주요내용 및 의료기기 장비목록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윤 성 복 :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는데 리스 차입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행정부원장 박재호 : 올해는 4개 리스사에서 제시한 금리조건 중 의료원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리스사를 선정하였으며, 향후에는 이사님께서 의견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 박 상 일 : 올해 130억원의 리스차입으로 인해 의료원의 부채비율이 얼마나 상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 호석

이사

신

상행

이사

이

영현

행정부원장 박재호 : 의료원은 매년 기본운영 의료장비 구입을 위하여 50억원 ~ 60억원 규모의 리스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권역외상센터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추가로 60억원 규모의 리스차입을 하였으나 매년 100억원 정도를 상환하고 있어 차입금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 박 상 일 : 매년 리스차입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장래 부채 상환 부담에 대한 재정 계획은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행정부원장 박재호 : 부채 상환에 따른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도별 리스상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 윤 성 복 : 구입예상 장비를 보면 영상의학과 MRI 장비를 도입하고자 계획하고 있는데 리스 기간인 5년간 의료수입은 얼마나 상승하게 되는지요? 고가 장비를 도입할 때는 의료수입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문드립니다.

기조실장 탁승제 : 연간 수입은 추정치로 연간 약 4억원 수준이며 해당 기기는 통상 10~15년을 사용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 장 : 이 외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주 인 옥 : 필수 의료장비의 구입비용 등을 충당하고자 차입하는 내용으로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의료원 원화리스 130억원 포괄계약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원화리스 130억원 포괄계약 승인 내용

구 분	계 약 조 건	비 고
리스사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	
계약금액	130억원	
리스기간	5년	
납부방법	3개월 후불	
금 리	기준금리(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AA-) + 0.50%	1년 단위 변동금리
리스형태	금융리스	
담보제공	무담보 신용	
종료후 처리	무상양도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제 6 호 아주대학교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발의.

행정부원장 박재호 :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기계장치, 의료기기, 의료비품, 일반비품, 전산장비, 기계기구, 집기비품 등 총 2,118점, 취득금액 3,583,802,104원의 고정자산에 대하여 불용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불용처분 품목은 모두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들로 품목별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의 불용자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문 길 주 : 내용연수가 6년에서 최대 20년 이상 경과한 자산의 불용처분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7 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 승인(안) 발의.

행정부원장 박재호 : 부속병원의 2014학년도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현황을 보시면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의 의료수익은 2013학년도 실적대비 4.8% 증가한 404,466백만원이며, 의료비용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390,300백만원, 의료이익은 전년대비 207.8% 증가한 14,166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의료외수익은 15,450백만원, 의료외비용이 28,393백만원으로 1,554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현황으로 2015.2.28 현재 아주대학교 부속병원의 총 자산규모는 220,983백만원으로서 유동자산이 67,328백만원, 고정자산이 153,655백만원이며, 부채와 자본은 유동부채가 81,932백만원, 고정부채 31,372백만원, 자본이 107,67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금현황을 설명 드리면 부속병원의 총수입은 461,359백만원이며, 총지출 금액은 430,879백만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30,480백만원이 차기로 이월되었습니다. 수입의 주요내역을 보면 의료수입이 384,059백만원, 기타의료수입이 20,407백만원, 의료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외수입이 25,694백만원, 투자와기타자산수입은 50백만원, 기타고정부채수입은 240백만원, 차입금수입은 6,464백만원, 전기이월운영자금이 23,9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153,435백만원, 재료비는 137,361백만원, 관리비는 51,893백만원, 의료외비용은 16,349백만원, 기타투자자산지출은 58백만원, 기타고정부채상환 340백만원, 차입금상환이 14,525백만원, 유형고정자산지출이 12,202백만원, 고유목적사업전출금이 44,716백만원 되겠으며 차기이월운영자금은 30,4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의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먼저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홍 기 : 성도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외부감사인의 결산 감사 결과, 부속병원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5년 2월 28일과 2014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기본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각각 의료기관회계규칙과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4회계연도 업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세 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주대병원 전산시스템 관리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는데 아주대병원은 2015년 3월 13일 금요일 21시 40분부터 약 58시간 동안 전산시스템 중앙서버가 다운되면서 진료업무가 마비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기간에 병원업무는 수기로 진행되었으며 업무 혼선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정상적으로 복구한 상태이나 시스템 장애 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업체 등 제3자를 통한 시스템 장애의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산장에서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백업매체 보관주기 연장 및 교체주기 단축, 백업매체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 실시간 데이터의 이중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전산시스템의 장애를 계기로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시 의료원의 큰 위협이 되는 요소와 이에 대처하는 위기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환자 급식 위탁 전환에 관한 사항으로 병원은 2014년 9월 1일부로 병원 환자식 운영방식을 직영에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병원은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 후 연간 약 7억원 이상의 손익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운영방식 전환 전 6개월의 손익과 비교하여 볼 때 손익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정 손익과 실제 손익의 차이는 환자식 위탁단가 추정 차이로 인해 발생하였는데, 최초 추정시와 계약시의 기간 차이가 불과 1개월 남짓임에도 불구하고 약 14%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타 대학병원의 위탁단가와 비교 및 최초 추정시와 계약시의 차이 원인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위탁운영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성협

이사

이영현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자재의 질 저하, 처방식사의 부적확성, 맛 그리고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병원 신뢰에 큰 위협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위탁운영의 철저한 점검과 업무 표준화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진료수입 감소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원의 진료수입은 전기 대비 약 4.4% 증가하였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전기 대비 진료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의료원은 해당 과별 예상대비 진료수입 현황을 매월 보고하고 있지만 진료수가 등 통제할 수 없는 원인 및 기타 진료수입 증감 원인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진료수입이 감소한 과에 대하여 진료수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으며, 진료수입 및 진료이익의 증감 원인을 통제가능요소와 통제불능요소로 구분하여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여 경영 성과 평가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사 장 : 감사께서 지적하신 내용 외에 부속병원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윤 성 복 : 어린이집 운영을 통하여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원장 탁 승 제 :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운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 박 상 일 : 결산서의 내용 중 의료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항목이 보이는데 의료사고의 경우 병원의 관리책임도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책임의 소재를 파악하여 손실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료원장 유희석 : 의료사고의 경우 적정관리 위원회 등을 통한 3단계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과실여부에 따라 의료진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 장 : 이외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주 인 욱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8 호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발의.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의 임기가 2015년 5월 31일자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교원징계위원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

상협

이사

이영현

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구성은 현행과 같이 학교의 장 추천자 중 4인과 이사 중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우선 학교의 장 추천자에 대한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해당교원 명단 및 자세한 이력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의 장께서 추천하신 8인의 후보 중 4인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고,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학교의 장 추천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정태용 교수, 의학과 김홍수 교수, 생명과학과 최홍근 교수, 경영학과 김광윤 교수에 대해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으로 선임·의결하다.)

이 사 장 : 학교법인 이사 중에서는 지난 해 이사회 의결에 따라 문길주 이사님, 주인욱 이사님, 박상일 이사님 세 분께서 징계위원을 맡아 주셨는데, 가능하시다면 올해 한 번 더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사 문길주, 주인욱, 박상일은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 선임을 승낙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심의하여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 문길주, 이사 주인욱, 이사 박상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용, 의학과 교수 김홍수, 생명과학과 교수 최홍근, 경영학과 교수 김광윤 등 7인을 임기 1년 (2015.6.1 ~ 2016.5.31)의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의결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9 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발의.

총무처장 이주희 :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계산서 총 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51,657백만원으로 먼저 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등록금 수입은 125,217백만원, 전입금 수입은 54,529백만원, 기부금수입 5,304백만원, 국고보조금수입 25,376백만원, 교육부대수입은 12,190백만원, 교육외수입은 3,271백만원, 기타자산수입은 1,917백만원, 임의기금인출수입 3,073백만원, 고정부채입금수입이 5,267백만원, 미사용전 기이월자금은 15,5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의 세부내역을 보면 보수가 106,703백만원, 관리운영비 22,751백만원, 연구비 5,881백만원, 학생경비 63,845백만원, 교육외비용은 2,494백만원이며, 기타자산지출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생협 이사 이영현

910백만원, 임의기금적립이 24,876백만원, 유형고정자산매입이 14,396백만원이고 장기차입금상환 875백만원, 기타고정부채상환이 110백만원,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이 8,8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2.28 현재 유동자금은 55,907백만원, 기타 유동자산은 17,285백만원, 투자자산 115백만원, 기타자산 2,855백만원, 임의기금 71,638백만원, 유형고정자산 158,823백만원으로 총자산규모는 전년대비 18,291백만원 증가한 306,623백만원입니다. 부채의 세부항목으로는 유동부채가 64,375백만원, 장기차입금은 9,000백만원, 기타고정부채는 1,471백만원으로서 부채 총계는 전년대비 5,854백만원 증가한 74,8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금에서는 출연기본금이 91,919백만원, 임의적립금이 71,638백만원, 운영차액이 68,220백만원으로 기본금의 합계는 231,777백만원으로서 부채와 기본금 합계는 306,6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학년도 운영계산서를 설명 드리면 운영수익과 운영비용 총계는 각각 전년대비 10,928백만원 증가한 225,812백만원으로, 비용 합계 215,237백만원, 기본금대체액 24,876백만원, 운영차액 대체액 △ 3,073백만원, 당기운영차액은 △ 11,22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의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홍 기 : 우선 아주대학교 교비회계와 관련하여 성도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외부감사인 결산감사 결과, 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5년 2월 28일과 2014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내용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였는데, 먼저 폐강대상 과목 수업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 운영에 관한 기준 제7조에 따르면 전공과목은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교양과목은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폐강한다고 되어 있으며, 예외조항으로 1개 과목만 개설된 전공필수 과목, 교직과목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기별 폐강대상 과목을 살펴본 결과 기준을 위배하고 폐강되지 아니한 과목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폐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과목으로 인해 강사료의 지급과 강의실 사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폐강기준을 준수하여 비용절감 및 합리적인 공간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정책적으로 예외사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준을 적절히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사이버강의 관리의 적정성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2014학년도 2학기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행

이사

이영현

이사

수강신청 직후 총학생회 및 학생제보에 따라 사이버강의 5개의 수강신청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이버강의를 매매한 8건 및 개인 ID와 패스워드를 타인에게 노출하고 대리 수강 신청한 2건을 발견하였습니다. 학생준칙에 의하면 이는 수업을 방해한 경우 혹은 이에 준하는 경우로 근신 처벌이 가능하고, 매매를 위한 본인의 ID와 패스워드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관련 규칙에 위배되어 징계대상이 됩니다. 교무팀은 사이버과목 등 수강신청 교과목 매매행위에 대한 징계를 안내하고 향후 적발시 중징계 할 것을 안내하였는데, 사이버강의 수강 신청시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연구비 직접 구매자산 관리의 적정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연구비 관리규칙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기자재, 도서 및 물품 구입은 중앙 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산 등록 후 구매관재팀은 일정 주기별 재물실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구비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연구비 사용은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카드 사용은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아주대 및 의료원의 과거 3년간 연구기자재 구입현황을 살펴본 결과 직접 구매시 특별한 사유에 대한 기술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며, 전체 구매 중 직접 구매 비율이 상당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구입시 개인카드를 사용이 불가하지만 개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규칙에 따라 연구 기자재 직접 구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유 및 용도 등 명확한 기술과 관리기관장은 직접 구매의 사유 및 사용용도 등이 타당한지 여부를 승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연구 기자재 직접 구매시 개인카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구매관재팀은 재물실사시 연구기자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로 교내 공간 사용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는데, 교내 공간의 사용은 법인 관리 운영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한 것이 발견되었으며, 공간신청 부서에서 기획팀에 신청한 후 기획팀은 공간배정에 관한 결정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몇몇 공간은 최초 신청한 공간 외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통보가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간신청부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관리하고 사용기간 종료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나 사용부서는 해당 공간의 사용기간 종료 후에도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향후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건들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교내 공간의 사용은 기획팀에서 승인시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 종료 시 원상태 복구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신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부서는 해당 공간의 사용기간 및 목적 등을 표기한 표지판을 마련하여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기간 종료시에는 원상태로 복구하고 관리부서에서 복구 확인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내 임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사립학교법 및 교육부의 재산관리안내 지침에 따르면 교육용재산에 대한 수익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신 상 험 이사 이 명 현

사업의 허용범위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고 이들의 편의를 위한 후생복지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용재산인 캠퍼스플라자를 임대하면서 학생들의 후생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운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으며, 더불어 캠퍼스플라자 내 임대 업체의 관리비 및 임대료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의 소홀로 향후 소송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2015년 교육부 사립대학 감사운영 방향 및 감사 지적 사례에서 교육용 기본재산을 일반인에게 임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납부한 사례가 감사 지적 사례로 예시된 바 있어 캠퍼스플라자 임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캠퍼스플라자 임대료 수익금을 학생후생복지를 위한 교내 장학금으로 집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용 기본재산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계약 중인 임대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임대 계약 기간동안 캠퍼스플라자 임대 업체의 관리비 및 임대료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감사 의견을 드립니다.

아주대학교총장 김동연 : 감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캠퍼스플라자는 내부 회의를 통하여 본래의 목적인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가능한 조치가 자산관리공사와의 임대 계약기간 만료시 연장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나머지 임대업체는 계약기간 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후 교육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학내 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캠퍼스플라자를 활용한 사무실 공간 재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사 장 : 감사께서 지적하신 내용 외에 교비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문 길 주 : 교비회계 결산(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10 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발의.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상임이사 이영현 : 정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안은 의안 제11호와 함께 논의될 안건으로 우리 법인의 이사 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1조에 따라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우리법인의 교육이사는 안재환 이사의 퇴임으로 현재 세 분만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아주대학교 총장을 이사로 선임하였던 선례에 따라 현 아주대학교 총장을 이사로 선임할 경우 한 분의 교육이사를 충원해야 하기에 이를 위하여 이사 정수를 11인에서 12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문 길 주 : 학교에 대한 정책 자문 필요성과 더불어 교육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법률에 따라 이사 정수를 1인 증원하는 내용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주 인 옥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정관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1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 중 이사장을 포함한 2인을 상근으로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2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 중 이사장을 포함한 2인을 상근으로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제 11 호 대우학원 임원 선임(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임원 선임(안) 발의.

의안 제10호에서 가결된 이사 정수 변경에 따라 공석인 이사 2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재환 이사의 후임을 선임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이영현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법인은 그간 아주대학교 총장을 이사로 선임하여 학교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아주대학교 제15대 총장으로 선출된 김동연 총장을 대우학원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이 사 주 인 육 : 신임 총장으로 선출된 김동연 총장의 이사 선임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김동연 총장의 이사 선임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김동연 총장을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임기 4년의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로 선임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이 사 장 : 다음으로 교육이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이사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이영현 : 신임 교육이사로 김성진 전 한경대학교 총장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김성진 총장은 2006년에 제14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한경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으로 사립학교법 제21조 교육경험 3년 이상의 자격도 충족하는 분으로 교육이사로서 학교의 정책자문 뿐만 아니라 대우학원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분이라 생각되어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 박 상 일 : 경륜, 학식 등에 비추어 대우학원 발전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김성진 총장의 이사 선임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김성진 총장을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석

이사

신 상협

이사

이

영현

임기 4년의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로 선임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아울러 김성진 총장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인 분으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교육이사로 선임합니다.

▣ 대우학원 임원 신·구 대비표

현 행				변 경			
직명	성명	임기	비고	직명	성명	임기	비고
이사장	추 호 석	2011.9.18 ~ 2015.9.17		이사장	추 호 석	2011.9.18 ~ 2015.9.17	
이 사	윤 성 복	2013.4.28 ~ 2017.4.27		이 사	윤 성 복	2013.4.28 ~ 2017.4.27	
이 사	안 재 환	2012.3.4 ~ 2015.1.31	교육이사	이 사	김 동 연	관할청승인일로부터 4년	
				이 사	김 성 진	관할청승인일로부터 4년	교육이사
이 사	문 길 주	2012.3.31 ~ 2016.3.30		이 사	문 길 주	2012.3.31 ~ 2016.3.30	
이 사	신 희 택	2014.2.15 ~ 2018.2.14	교육이사	이 사	신 희 택	2014.2.15 ~ 2018.2.14	교육이사
이 사	주 인 욱	2013.4.19 ~ 2017.4.18	교육이사	이 사	주 인 욱	2013.4.19 ~ 2017.4.18	교육이사
이 사	박 상 일	2012.3.19 ~ 2016.3.18	개방이사	이 사	박 상 일	2012.3.19 ~ 2016.3.18	개방이사
이 사	신 상 협	2012.3.19 ~ 2016.3.18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 사	신 상 협	2012.3.19 ~ 2016.3.18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 사	이 영 현	2013.4.19 ~ 2017.4.18		이 사	이 영 현	2013.4.19 ~ 2017.4.18	
이 사	최 홍	2012.3.19 ~ 2016.3.18	개방이사	이 사	최 홍	2012.3.19 ~ 2016.3.18	개방이사
이 사	김 선 용	2012.2.7 ~ 2016.2.6		이 사	김 선 용	2012.2.7 ~ 2016.2.6	
감 사	문 휘 창	2014.5.14 ~ 2017.5.13		감 사	문 휘 창	2014.5.14 ~ 2017.5.13	
감 사	배 홍 기	2013.4.28 ~ 2016.4.27		감 사	배 홍 기	2013.4.28 ~ 2016.4.27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 사

신 상 협

이 사

이 영 현

제 12 호 2014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안)

이 사 장 : 2014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먼저 결산(안)의 자금계산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7,235백만원으로서 수입의 내역을 보면 부속병원전입금 수입이 4,867백만원, 일반기부금 수입이 150백만원, 예금이자수입이 2,047백만원, 임대료·관리비수입이 1,832백만원, 잡수입 등 1백만원으로 운영수입은 8,897백만원이며, 투자와기타자산수입이 11,281백만원, 임대보증금수입이 260백만원,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6,7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임직원보수 696백만원, 시설관리비 137백만원, 일반관리비 1,312백만원, 운영비 438백만원, 지급이자 33백만원, 전출금 7,667백만원으로 운영지출은 10,283백만원이며, 투자와기타자산지출이 410백만원, 자산및부채지출이 6,733백만원, 2014 회계연도말 차기로 이월되는 자금은 9,8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2.28 현재 자산규모는 331,016백만원이며, 부채는 2,795백만원, 기본금총액은 328,2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유동자금 9,549백만원, 기타유동자산 364백만원, 설치학교 172,621백만원, 부속병원투자 79,859백만원, 투자유가증권 451백만원, 기타투자자산 23백만원, 유형고정자산 20,067백만원, 원금보존 기타기금 47,399백만원, 임의퇴직기금 429백만원, 기타자산 등이 254백만원으로 자산총계는 331,016백만원이며, 부채의 세부항목으로 유동부채는 105백만원, 장기차입금이 1,177백만원, 기타고정부채 1,513백만원으로 부채총액은 2,795백만원이며, 출연기본금은 248,518백만원, 운영차액이 31,875백만원, 원금보존기타적립금 47,399백만원, 임의퇴직적립금 429백만원 등 기본금은 328,221백만원으로 부채와 기본금 합계는 331,0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계산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법인회계의 운영수익은 12,831백만원, 운영비용은 14,500백만원, 기본금 대체액 60백만원 및 운영차액대체액은 11,280백만원으로 당기운영차액은 9,5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안)의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홍 기 : 성도회계법인의 결산감사 의견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에 대하여 2015년 2월 28일과 2014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내용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법인은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검토한 바,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금의 학교전출 의무기준에 따른 2015년 4월 1일 현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45.7%로 타 학교법인의 확보율과 비교하여 저조하지 않은 규모이며 전출 실적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법정수익률인 3.5% 이상인 4.8%의 수익률을 나타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금 법정부담률 또한 법정전출 의무비율인 80% 이상을 충족하였습니다.

이 사 장 : 감사께서 의견주신 내용 외에 법인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문 길 주 : 법인회계 결산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윤 성 복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4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 장 : 제318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최 홍 : 이사장님과 신상협 이사님 그리고 이영현 이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석임원 9인 전원이 최홍 이사의 의견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을 참석임원의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 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신 상 협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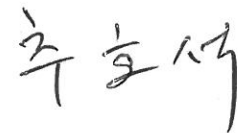
이 영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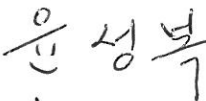
10. 폐회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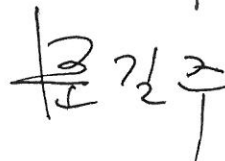
이 사 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18차 이사회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2015년 5월 14일


이사장 추 호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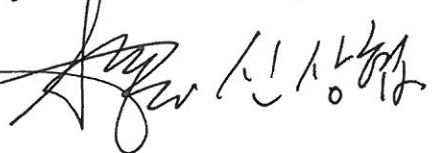
이 사 윤 성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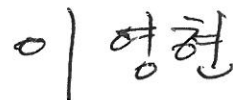
이 사 문 길 주 

이 사 신 희 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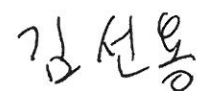
이 사 주 인 옥 

이 사 박 상 일 

이 사 신 상 협 

이 사 이 영 현 

이 사 최 홍 

이 사 김 선 용 

감 사 배 홍 기 